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0 - 147호

주거복지센터 계약직(센터장, 상담사) 공개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인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직 직원(센터장, 상담사)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1. 채용분야 · 인원 및 주요업무

구분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계약직	주거복지센터 (제주시 권역)	센터장	1명	◦ 주거복지센터(제주시 권역) 실무 총괄
		상담사	2명	◦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 관리 ◦ 긴급주거비 등 직접 지원 사업 ◦ 읍·면·동 주민센터 실무자 및 도민교육 ◦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 ◦ 주거복지센터 홍보

2. 자격요건

1) 공통 자격요건

-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제주특별자치도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 이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자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주거복지사 자격 소지자**
-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2) 분야별 자격요건 <다음 중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자격요건
센터장	◦ 12년 이상 사회복지[1] 또는 주거복지[2]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12년 이상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 5년 이상 사회복지 또는 주거복지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5년 이상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상담사	◦ 3년 이상 사회복지 또는 주거복지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3년 이상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 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가점

가점 대상	제출서류	가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관련법에 의거 40% 이상 득점 시 가점 부여
(단,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가점 미부여)

4. 전형절차 <※ 정부 정책에 따라 블라인드 입사지원 및 면접 진행>

가. 전형진행 절차

서류전형	▶	역량면접	▶	최종면접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
자격요건 확인 (적·부 판정)		역량평가		인성면접		신원조회 등		임용

나. 전형별 배수 선발 기준

서류전형	역량면접	최종면접
적격자 전원	3배수 이내	1배수 이내

※ 허위 사실 기재 등에 따른 합격 취소, 임용등록포기 및 임용 후 퇴직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하여 최종면접 결과 70점 이상 획득자에 한해 예비합격자 운영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1) 사회복지 분야 경력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 근무 경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운영지침 준용)
2) 주거복지 분야 경력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해당되는 업무 경력

다. 전형별 주요사항

◦ **서류전형(자격요건 확인)** : 지원분야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

◦ **역량 면접전형**

- 전형별 합격배수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
- 평가기준 : 적합성(조직·직무·동기), 신(身), 언(言), 서(書), 판(判)

5. 최종합격자 선정

가. 최종 면접전형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나. 평가기준 : 사고와 자세, 청렴도 및 신뢰도, 책임감 및 적극성, 협업성 및 희생정신, 용모·예의·품행 등

다. 최종 면접전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순

② 이전 전형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역량면접)

6.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5. 7.(목) ~ 5. 18.(월)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www.jpdc.co.kr) 접수

◦ 온라인 원서접수만 인정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불가)

7. 근무 조건

구분	연봉	근무시간	근무장소
센터장	- 상한선 : 50,704천원 - 하한선 : 26,164천원	1주 40시간 (09:00 ~ 18:00)	제주시 권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사	- 상한선 : 45,257천원 - 하한선 : 24,496천원		

※ 1. 근무시간 등은 공사 제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름

2. 계약기간은 상기의 기간으로 하되, 위·수탁 사업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도래 시 그 기간까지로 함.

3. 위·수탁 사업 연장 시 계약기간은 연장기간까지로 하되, 연장기간 중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도래 시 그 기간까지로 함.

4.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이설) 종사자 보수기준표 기준(센터장 3급, 상담사 5급) 적용

-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식비 포함
- (센터장) 직책수행비, 가족수당 별도 지급, (상담사)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별도 지급

8. 제출서류 <※ 역량면접 진행 시 제출>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전형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전형	제출서류	비고
역량면접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이전 이력 표시) ◦ 경력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주거복지사 자격증 사본 ◦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 사본	자격요건 확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최종면접 결과 동점자 처리 기준 확인
	◦ 장애인 /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확인 가능 서류	

※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우리 공사는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

9.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접수번호가 송부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응시분야에 관련이 있는 경우 한해 작성

❑ 근무지는 제주시 권역 주거복지센터이며, 입사 후 근무지 지역 거주가 가능하여야 함

❑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 시 또는 발령 시 근무지(제주시, 서귀포시) 변경 가능

❑ 임용 예정일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해당 분야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자격요건 확인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면접전형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허위 사실 기재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등록 포기 및 임용 후 퇴직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 여부 결정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되, 온라인으로 등록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 (제출서류 반환 요청 시 별첨 서식 작성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채용문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064-780-3514)으로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인재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10.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접수	5. 7.(목) ~ 5. 18.(월)	10일 이상
서류전형	5. 19.(화) ~ 5. 20.(수)	
역량면접	5. 23.(토)	예정
최종면접	5. 30.(토)	예정
합격예비자 발표	6. 2.(화)	예정
임용 등록	6. 3.(수) ~ 6. 8.(월)	예정
결격사유 조회	6. 9.(화) ~ 6. 12.(금)	예정
임용	6. 15.(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예정 일정이며, **응시자 및 각 전형별 합격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매 전형 일정 고시 확정·게시함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